

선박보안정보 통보 항목의 일부 변경에 대하여

외국에서 일본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중요한 알림입니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 (2004년 7월 1일 시행)에 의하여 외국에서 일본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일본에 입항(입역) 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해상보안부서에 「선박보안정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8년 7월 16일부터 통보 항목이 일부 변경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통보 항목에 다음 항목이 추가됩니다.



▪ 일본선박

→ 2016년 12월 9일 이후, 북한 항구에 입항한 이력의 유무.

▪ 일본선박 이외의 선박

→ 2016년 2월 19일 이후, 북한 항구에 입항한 이력의 유무.

※ 이 통보는 선박의 크기, 종류 등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일본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이 통보는 일본 항구에 입항할 경우와 특정해역(도쿄만, 이세만, 세토나이카이)에 입역할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 이 통보는 일본에 입항하기 직전의 항구가 외국 항구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단 외국에서 일본으로 입항한 후에 일본국내를 항해할 경우 다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 **통보는 어디로 하면 됩니까?**

- * 입항할 항구를 관할하는 해상보안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입항할 항구를 결정하지 못한 채 특정해역에 입역할 경우 또는 일본 항구에 입항하지 않고 특정해역에 입역할 경우에는 고시로 정해진 해상보안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장 가까운 관구해상보안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보자, 통보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 통보자 . . . 기본적으로는 선장이지만, 선장의 위임을 받은 소유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 (대리점 등) 도 가능합니다
- * 통보방법 . . . NACCS 외에 FAX, 서면 우편 송부·직접 제출 등도 가능합니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통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NACCS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입항 24시간 전까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 * 즉시 항구를 관할하는 해상보안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급박한 위난이 있어서 긴급히 입항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항한 후에 바로 통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장 가까운 관구해상보안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보안정보의 통보에 관한 문의는 가장 가까운 관구해상보안 본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해상보안청의 홈페이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담당과	주소	전화번호
제1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北海道小樽市港町5-2 홋카이도 오타루시 미나토마치초5-2	0134-27-0118
제2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宮城県塩釜市貞山通3-4-1 미야기켄 시오가마시 데이산도리3-4-1	022-363-0111
제3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神奈川県横浜市中区北仲通5-57 가나가와켄 요코하마시 나카쿠 기타나카도리5-57	045-211-1118
제4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愛知県名古屋港区入船2-3-12 아이치켄 나고야시 미나토쿠 이리후네2-3-12	052-661-1611
제5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兵庫県神戸市中央区波止場町1-1 효고켄 고베시 주오쿠 하토바초1-1	078-391-6551
제6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広島県広島市南区宇品海岸3-10-17 히로시마켄 히로시마시 미나미쿠 우지나카이간3-10-17	082-251-5111
제7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福岡県北九州市門司区西海岸1-3-10 후쿠오카켄 기타큐슈시 모지쿠 니시카이간1-3-10	093-321-2931
제8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京都府舞鶴市字下福井901 교토후 마이즈루시 아자 시모후쿠이901	0773-76-4100
제9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新潟県新潟市中央区美咲町1-2-1 니가다켄 니가다시 주오쿠 미사키초1-2-1	025-285-0118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鹿児島県鹿児島市東郡元町4-1 가고시마켄 가고시마시 히가시코리모토초4-1	099-250-9800
제11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沖縄県那覇市港町2-11-1 오키나와켄 나하시 미나토마치2-11-1	098-867-0118

해상보안청 홈페이지 : <http://www.kaiho.mlit.go.jp/ope/apply/hoan00.html>

- 이 제도는 테러 대책을 위해 외국에서 일본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선박의 기초정보나 보안조치의 실시상황에 관한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 통보에 관해 해상보안청으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입항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보하지 않은 채 입항한 선장 또는 거짓 통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보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심각한 입항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